

인천지방법원 2024. 12. 20 선고 2024가단2826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29.

판 결 선 고 2024. 12. 20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52,682,798원 및 그중 52,284,749원에 대하여 2024. 8. 6.부터 2024. 10. 19.까지는 연 7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들 사이에 2024. 2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4. 2. 1. 접수 제37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피고들: 민사소송법 제288조(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지원

별지